

하남시고시 제2021-50호

하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하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거릿대울지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열람장소(하남시청 도시계획과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21. 4. 16.
하 남 시 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2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사항에 한함
 - 1) 공간시설
 - 가) 공원

■ 공원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경 전	변경 후		
변경	324	공원	소공원	하산곡동 339-7번지 일원	498	-	498	경고제06-145호 (2006.05.22.)	거릿 대울 지구

■ 공원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24	소공원	· 선형변경	· 토지분할 불가로 인한 소공원 선형 변경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
5. 건축물에 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
6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